

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(간호사) 임용 공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(간호사)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17일

노원구청장

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

근무처	임용분야	인원	성별	직무내용
노원구보건소 (건강증진팀)	간호사	“라”급 (1명)	제한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관리 전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- 지역주민 건강교육 및 상담- 기간제근로자 및 센터직원 교육계획 및 운영- 실적관리(평생건강관리사업, 대사증후군관리사업)• 교육자료 개발 및 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

2. 시험방법

가. 1차 서류전형

-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로 합격자 결정

나. 2차 면접심사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
- 2차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,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
- ☞ 신원조회, 건강진단 등에 따라 합격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예비합격자 선발

3. 응시자격(공통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지역·연령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4. 응시자격(자격기준)

- 우대조건 : 보건기관 근무 경력자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, 운전면허 소지자
- 선발분야 응시자격 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(기준일 : 면접심사 시행 예정일)

구분(등급)	임용분야	응시자격기준
시간선택제 임기제 (라급)	간호사	◎ 의료법에서 정한 “간호사 면허”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※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

5. 임용기간 및 근무조건 등

가. 임용기간 :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

※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

나. 근무조건 : 주 35시간 근무

다. 보수수준 : 연봉 31,345천원(수당 별도)

※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
다.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 포함), 고용·산재보험) 가입

6. 공고기간 및 방법

가. 공고기간 : 2017. 2. 17(금) ~ 2. 27(월), 10일간

나. 공고방법 : 노원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, 구청 게시판 게시 등

7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및 접수 : 2017. 2. 22(수) ~ 2. 27(월), 4일간

나. 장 소 : 노원구보건소 4층 의약과 건강증진팀

다. 방 법 : 근무시간(평일 09:00~18:00) 내에 직접 방문제출 **※ 우편접수 불가**

8. 시험일정

가.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(합격자 발표 : 2017. 2. 28(화) / 개별통지)

나. 제2차 시험 : 면접심사

- 일 시 : 2017. 3. 3(금) 10:00 예정 *변경될 수 있음(서류전형합격자에게 별도공지)

- 장 소 : 노원구보건소 지하 보건교육실

다. 최종 합격자 발표 : 2017. 3월 중(개별 유선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)

9.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
나. 이력서(사진부착) 1부(별지 제2호 서식) 및 자기소개서 1부(별지 제3호 서식)

다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별지 제4호 서식)

라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학력확인서) 1부

마. 임용분야 면허증 및 관련 자격증 사본(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) 각1부

바. 경력증명서 1부

사. 주민등록등·초본(병력사항 기재분) 각1부

아. 응시수수료 : 라급(5,000원) 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(구청 재무과에서 구입)

10. 기타사항

가. 복무는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에 따릅니다.

- 나. 원서 접수 시 노원구 홈페이지(www.nowon.kr)에서 첨부파일(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)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 바랍니다.
- 다.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.
- 라.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마.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「국민연금법」의 적용을 받습니다.
- 바.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사.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,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.
- 아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자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대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포함)에는 일정을 재공고하여 모집합니다.
- 차. 문의 :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(☎ 2116-4341)